

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「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7년 8월 17일

화 성 시 의 회 의 장



1. 자치법규명 :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화성시 신규 전입자들과 다자녀 가정, 청소년에 대한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및 면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규 주민들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화성시의 가치와 애郷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,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,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

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,

- 「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서 규정한 이용료 감면 규정을 「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에 “다자녀 가정”, “청소년”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
- 나.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 제1항)
- 다. 시티투어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의2 제2항, 제3항)

4. 자치법규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 : 2017. 8. 17. ~ 2017. 8. 22. (5일간)
-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이메일(yoon8264@korea.kr) 등
- 다. 기재내용 : 성명, 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), 의견
- 라. 제출기관 : 화성시의회(교육복지경제위원회)
 - 주 소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
 - 전 화 : (031) 369 - 6103
 - 팩 스 : (031) 369 - 2540